

1. 개정이유

장사법 개정에 따른 하위 법령 정비, 그간 장사법령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설치기준 규제 완화(별표 3)

1)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설치기준의 규제 재검토기한 도래에 따라 시행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2) 다만, 교육생의 안전, 위생, 편의 등을 고려하여 강의실과 사무실의 연면적 기준(80㎡ 이상), 전용강의실 또는 통합강의실을 갖추도록 하되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전용강의실 및 통합강의실의 1명당 설치면적기준 제한을 삭제하여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설치를 용이하도록 함

나. 시신·유골(매장· 화장)신고서 화장 후 처리방법 신설(별지 제1, 2호서식)

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산분장 제도가 시행('25.1.24.)됨에 따라 화장신고서 작성 시, 장사통계관리 고도화를 위해 화장 후 장사방법으로 자연장, 시설산분, 해양산분을 구분하여 선택하도록 기재란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1호가목2) 중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전용강의실”을 “전용강의실”로 하고, 같은 란 가)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란 (1) 및 (2)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란 나)를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전용강의실은 이론강의 또는 실기연습을 실시하기 위한 강의실로써, 통합강의실이 없는 경우에는 이론강의 전용강의실 및 실기연습 전용강의실을 각각 갖추어야 한다.

나) 통합강의실은 이론강의와 실기연습을 병행할 수 있는 강의실을 말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시신·유골 [] 매장 신고서

[] 화장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 접수번호 | 접수일 | 발급일 | 처리기간 | 즉시 | |
|------|----------------|---|------------------|---|--------------|
| 사망자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 |
| | 주 소 | | | | |
| | 사망장소 | | 사망사유 사망연월일 | . . . | |
| | 매장 또는 화장 장소 | | 분 묘 설 치 연 월 일 | . . . | |
| | 화장 후 장사방법 | <input type="checkbox"/> 매장 <input type="checkbox"/> 봉안 <input type="checkbox"/> 자연장(산분제외) <input type="checkbox"/> 시설산분 <input type="checkbox"/> 해양산분 | 구분 | <input type="checkbox"/> 공설 <input type="checkbox"/> 사설 | |
| 신고인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 사망자와의 관 계 |
| | 주 소 | | | | 전화번호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매장(화장)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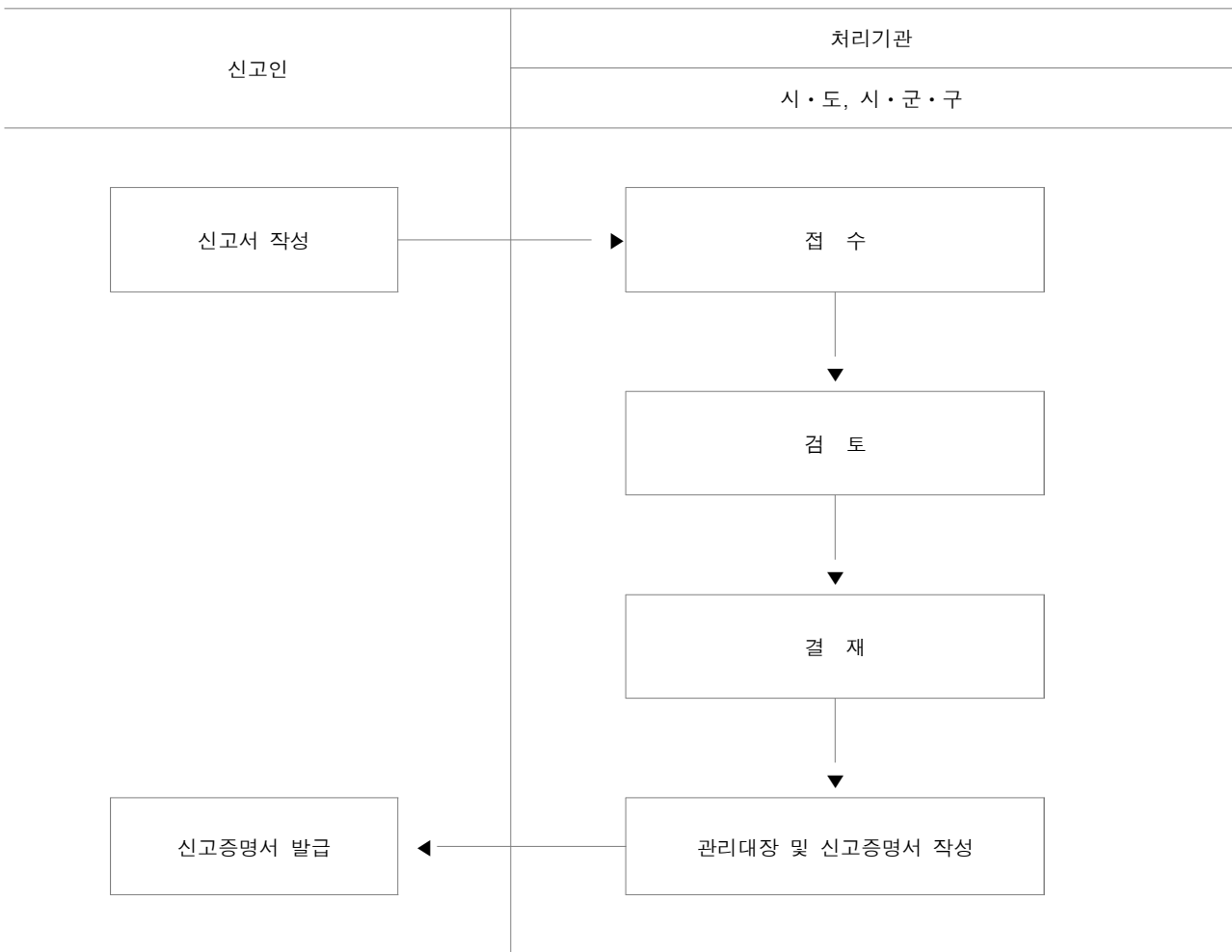
| | |
|------|---|
| 첨부서류 |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또는 읍·면·동장의 확인서(화장신고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제 호 | | | | | |
|--|----------------|---|---------------|---|--------------|
| 시신·유골 [] 매장 신고증명서 | | | | | |
| [] 화장 | | | | | |
| 사망자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 |
| | 주 소 | | | | |
| | 매장 또는 화장 장소 | | 사망사유 사망연월일 | . . . | |
| | 화장 후 장사방법 | <input type="checkbox"/> 매장 <input type="checkbox"/> 봉안 <input type="checkbox"/> 자연장(산분제외) <input type="checkbox"/> 시설산분 <input type="checkbox"/> 해양산분 | 구분 | <input type="checkbox"/> 공설 <input type="checkbox"/> 사설 | |
| 신고인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 사망자와의 관 계 |
| | 주 소 | | | | 전화번호 |
| <p>「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매장(화장)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p> <div style="border: 2px solid orange; padding: 5px; display: inline-block; margin-left: auto;">관인</div>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m²]

처리 절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죽은 태아 [] 매장 신고서 [] 화장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 접수번호 | 접수일 | 발급일 | 처리기간 | 즉시 | |
|------|-------------|---|-----------|---|-----------------|
| 부(모)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 |
| | 주 소 | | 전화번호 | | |
| | 사산장소 | | 임신주수 | | |
| | 사산 연월일 | | 사산사유 | | |
| | 매장 또는 화장 장소 | | 분묘 설치 연월일 | | |
| | 화장 후 장사방법 | <input type="checkbox"/> 매장 <input type="checkbox"/> 봉안 <input type="checkbox"/> 자연장(산분제외) <input type="checkbox"/> 시설산분 <input type="checkbox"/> 해양산분 | 구분 | <input type="checkbox"/> 공설 <input type="checkbox"/> 사설 | |
| 신고인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 사산자(죽은 태아)와의 관계 |
| | 주 소 | | 전화번호 | |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매장(화장)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제 호 | | | | | | |
|---|-------------|---|--------|----|---|--|
| 죽은 태아 [] 매장 신고증명서 [] 화장 | | | | | | |
| 죽은 태아 | 임신주수 | | 사산사유 | | 사산연월일 | |
| | 매장 또는 화장 장소 | | | | 분묘 설치 연월일 | |
| | 화장 후 장사방법 | <input type="checkbox"/> 매장 <input type="checkbox"/> 봉안 <input type="checkbox"/> 자연장(산분제외) <input type="checkbox"/> 시설산분 <input type="checkbox"/> 해양산분 | | 구분 | <input type="checkbox"/> 공설 <input type="checkbox"/> 사설 | |
| 신고인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 사산자(죽은 태아)와의 관계 | |
| | 주 소 | | | | 전화번호 | |
| <p>「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매장(화장)신고를 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관인</p> | | | | | | |

처리 절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